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업무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항공정책실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,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원 2명(5급 1명, 6급 1명)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17항제9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공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

15. 해외공항 사업수주지원 및 해외 진출 협력에 관한 사항

16. 헬기장, 수상비행장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
제12조제18항제18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9. 공항 및 비행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(기본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)

제56조제2항 중 “2명”을 “2명), 기후변화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, 송무·법리검토업무를 담당하는 1명(6급 1명”으로 한다.

별표 1 관할 구역란 중 “131km”를 “124.3km”로, 같은 란 중 “남포선, 강경선, 대전선, 장항화물선”을 “강경선, 대전선”으로 한다.

별표 5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철도 특별 사법	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 경찰대	서울특별시 중구	경부고속선(시흥연결선~서울기점 59.79 5km 지점), 경부선 중 서울역~평택역 (서울기점 78.35km 지점), 중앙선 중 청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

경찰대			량리역~양평역 서쪽, 경인선, 용산선, 경춘선, 경원선, 경의선, 교외선, 망우선, 안산선, 남부화물기지선, 과천선, 분당선, 일산선, 인천국제공항선, 신분당선, 수인선, 문산기지선, 병점기지선, 평내기지선, 경강선 중 성남역~여주역, 수서평택고속선, 서해선
	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	부산광역시 동구	경부고속선(김천구미역~부산역), 경부선(영동역 남쪽~부산역), 중앙선 우보역 남쪽, 경전선 진주역 동쪽, 진해선, 대구선, 우암선, 부전선, 장생포선, 울산항선, 괴동선, 온산선, 가야선, 양산화물선, 건천연결선, 동해선, 덕산선, 부산신항선, 신항북선, 신항남선, 경북선 중 김천역~어등역, 문경선, 신동화물선
	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	광주광역시 광산구	호남고속선 중 오송기점 67.5km 지점 남쪽, 호남선 중 강경역 남쪽, 경전선 중 광주송정역~진주역, 장항선 중 장항역 남쪽(천안기점 124.3km 지점), 북송정분기~북송정역, 전라선, 군산화물선, 옥구선, 광주선, 여천선, 북전주선, 광양제철선, 대불선, 장성화물선, 광양항선, 신광양항선, 전경삼각선
	제천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	충청북도 제천시	중앙선 중 양평역~우보역, 충북선 중 주덕역 동쪽(조치원기점 75km 지점), 경북선 어등역 동쪽, 정선선, 삼척선, 영동선, 태백선, 묵호항선, 북평선, 함백선, 경강선 중 원주역~강릉역, 용문기지선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항공정책실) ① ~ ⑯ (생략)	제12조(항공정책실) ① ~ ⑯ (현행과 같음)
<17> 공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----- -----.
1. ~ 8. (생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<u>공항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 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</u>	<삭제>
10. ~ 13. (생략)	10. ~ 13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4. <u>공항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</u>
<신설>	15. <u>해외공항 사업수주지원 및 해외 진출 협력에 관한 사항</u>
<신설>	16. <u>헬기장, 수상비행장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</u>
<18> 공항안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----- -----.
1. ~ 17. (생략)	1. ~ 17. (현행과 같음)
18. <u>헬기장, 수상비행장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설치 등에 관한 사항</u>	<삭제>
<신설>	19. <u>공항 및 비행장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(기본계</u>

⑬ (생 략) 제56조(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 략) ② 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,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(4급 또는 5급 1명),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2명(9급 2명) 및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16명(4급 2명, 4급 또는 5급 2명, 5급 7명, 6급 5명)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③ 삭 제 ④ (생 략)	<u>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</u> <u>에 한함)</u> ⑬ (현행과 같음) 제56조(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2명), <u>기후변화업무를 담당하는 1명(5급 1명), 송무·법리검토업무를 담당하는 1명(6급 1명</u>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--	---